

금년 농정시책, 이런 내용이 달라진다

농 립부는 축산업 등록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등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정리·발표 하였다. 이에 본고에서는 양계산업에 있어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홍보하고자 한다. - 편집자주 -

1

닭·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(☎ 02-500-1923)

- 현재 닭,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, 도축이후 유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1일 도축수 8만수 이상되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장유통이 의무화 됩니다.
-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우선 대단위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-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

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” 시행 농림부 축산정책과 (☎ 02-500-1995)

- '07.1.1부터 축산업 등록농가(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 사육업)는 농림부 고시 “제 2004-8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축산농가가 적절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때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, 각종 약품

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

-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,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※ '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'은 농림부 고시 제2004-8호(2004년 3월 17일 제정) 참조

※ '적정 가축사육기준'을 준수해야 하는 축산업등록 농가수는 전국적으로 55천호('06.3월말 현재) 임

• 한·육우 29.6천호, 젖소 8.8천호, 돼지 9.8천호, 닭 6.7천호

- 축산업등록 농가가 '적정가축 사육기준'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4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- 축산농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, 축사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 등 친환경을 위해 '07.1.1부터는 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.

3

농지내 축사설치 용이

농림부 농지과 (☎ 500-1670)

-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, 농지법 제2조(농지의 정의)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축사의 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,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
-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며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

* 농지법 제2조1호 나목 개정(2006.12.7 국회본회의 통과)

- 향후, 축사부지를 농지정의를 포함시킴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(농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내)할 계획입니다.

4

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

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(☎02-500-1812)

-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·공포('06.9.27)됨에 따라 2007년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, 인증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

-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“전환기유기농산물” 인증이 삭제되면서 3종류(유기농

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)로 간소화되고 축산물의 경우 “무항생제축산물” 인증이 신설됩니다.

-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. 다만,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종전과 같이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. 종전에는 “생산자”와 “수입자”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“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”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-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. 종전에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 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,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지적요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. 자재생산·유통업체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경우 그 자재의 주성분,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게 되며, 농업인들은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.

5

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 인하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(☎ 500-1847)

- 위생시설 인증(HACCP, ISO22000)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의 금리가 '06년의 경우 4%(농업·농촌기본법상 농업인, 농업경영체, 농업인단체는 3%)에서 '07년 사업부터 농업인·비농업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연 2%의 금리로 인하됩니다.
- 위 자금 지원을 원하시는 사업운영자 분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사업신청을 하신 후 재무구조, 영업실적, 사업능력 등 사업능력평가와 지원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서,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에 한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.

6

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농림부 축산축산물위생과 (☎ 02-500-1926),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(☎ 02-500-1926)
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범위가 확대됩니다
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㎡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하고, 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·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하였습니다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 -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 -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,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,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

7

공익수의사제도 신설·운영
농림부 가축방역과(☎ 02-500-1995)

-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,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및 동·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“공익수의사”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.
 - 공익수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자로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은 자입니다.
 - 공익수의사는 지자체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가 대체됩니다.
 - * 유사 대체복무제도 : 공중보건조사(보건복지부), 공익법무관(법무부)
 - 자격요건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며,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과 중위 1호봉에서 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습니다.
 - 주요업무는 ①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, 질병예찰, 병성감정, 혈청검사 등의 가축방역, ②원유·도축 검사, 가공장 위생관리,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, ③수출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등 입니다.
- '07년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하여 '09년부터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 일선 현장에 배치·운영합니다.
 - 국방부에서 수의과대학 재학생중에서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관리하며, 공익수의사에 선발된 자에 대해 4주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고, 가축방역 관련 직무교육 등을 마친 후 근무기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. **양계**